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6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재관·이광희·박지원

이병진 · 송재봉 · 김남근

강준현 • 문진석 • 김원이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 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을 "투자하는"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 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4(외국인기술자 유치 비
	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
	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를 유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u>3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u>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u>야 한다.</u>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1. (현행과 같음)
2
가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 다)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 분의 15(중소기업은 100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u>-투자하는</u>
100분의	30
100분의	50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